

# 예산총칙

2022년도 간주예산 3 차

제 1 조 202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659,967,637	19,799,029
일반회계	643,970,719	19,319,122
특별회계	15,996,918	479,908
기타특별회계	15,996,918	479,908
의료급여특별회계	850,764	25,523
지하수관리특별회계	1,869,684	56,091
주차장특별회계	11,193,992	335,820
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	839,582	25,187
재정비축진특별회계	1,242,896	37,287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음.

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음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"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0,404,056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7,1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금회 추경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의존재원(국·시비보조금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 등)과 상급기관 공문에 의한 지방비 부담이 있는 보조사업의 구비부담금은 예산승인(명시이월 포함)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.